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406 실버형(20년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406 실버형(20년갱신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406 실버형(20년갱신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406 실버형(20년갱신형)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혈압, 당뇨병 무심사로 만성질환이 있는 분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고혈압·당뇨병 무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고혈압, 당뇨병"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체신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1세부터 남자77세, 여자80세까지 가입 가능한 고연령 전용 암치료 전문보험입니다.
- 암 진단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할인

1. 피보험자가 B형 간염 항체 보유시 항체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신관서가 확인시에는 서류 제출시점 이후의 차회보험료부터 영업보험료(갱신계약 영업보험료 포함)의 3%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2.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를 제출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이후 차회보험료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되며, 갱신계약의 경우도 갱신일을 계약일로 하여 위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1)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이 없을 것
 - 2) 당뇨병(공복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는 경우)이 없을 것
3. ‘1항’ 및 ‘2항’의 할인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2항’의 할인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남자	여자	20년 만기 (갱신형)	전기납	월납
	61~ 77세	61~ 80세			
갱신계약	81~99세		100세 만기		

■ 가입한도 : 1,000만 원 ~ 2,000만 원 (500만 원 단위)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계약의 갱신

갱신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피보험자의 99세 계약해당일까지 갱신 가능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종료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선택)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선택)
-----	--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 1년 미만	500만 원 +플러스적립금
		보험계약일부 1년 이상	1,000만 원 +플러스적립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 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 1년 미만	50만 원
		보험계약일부 1년 이상	100만 원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

- 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플러스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7. 플러스적립금은 보험기간 중 책임준비금과 예정 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8.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10.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 고
만 기 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장애시는 장애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서 ■ 암 진단 확정시는 암진단서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암 진 단 시	○	○	○	
해 약 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 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406 실버형(20년갱신형)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50%입니다.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65세	70세	75세
특정질환(고혈압, 당뇨병) 무심사 암 발생률	남자	0.020321	0.027413	0.032282
	여자	0.009918	0.011757	0.013572
특정질환(고혈압, 당뇨병) 무심사 기타피부암 발생률	남자	0.000325	0.000469	0.000658
	여자	0.000242	0.000414	0.000684
특정질환(고혈압, 당뇨병) 무심사 갑상선암 발생률	남자	0.000410	0.000331	0.000222
	여자	0.001371	0.001010	0.000623
특정질환(고혈압, 당뇨병) 무심사 대장점막내암 발생률	남자	0.000084	0.000107	0.000121
	여자	0.000030	0.000042	0.000054
특정질환(고혈압, 당뇨병) 무심사 제자리암 발생률	남자	0.001084	0.001450	0.001629
	여자	0.001229	0.001160	0.001037
특정질환(고혈압, 당뇨병) 무심사 경계성종양 발생률	남자	0.000376	0.000460	0.000560
	여자	0.000279	0.000280	0.000298

③ 적용이율

적용이율이란 체신관서가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406 실버형(20년갱신형)은 신공시이율IV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406 실버형(20년갱신형)의 신공시이율IV가 변동될 경우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④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 등이 하락하여도 체신관서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406 실버형(20년갱신형)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406 실버형(20년갱신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남자 70세, 20년 만기, 전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해약환급금	신공시이율Ⅳ
1년	474,000	48,900	48,900
3년	1,422,000	349,300	349,300
5년	2,370,000	622,600	622,600
7년	3,318,000	761,600	761,600
10년	4,740,000	910,700	910,700
15년	7,110,000	848,600	848,600
20년	9,480,000	0	0

- 주) 1. 위 예시된 최저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으로 예정이율(2.50%)이 적용되어 계산되며, 향후 신공시이율Ⅳ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약환급금입니다.
2. 위 예시된 신공시이율Ⅳ 적용 해약환급금은 2.50%의 신공시이율Ⅳ가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되면 위 예시된 금액도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료를 계약해당일에 납입한 경우의 금액이므로, 계약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 예시된 금액도 달라집니다.